

# 상업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1. 의결주문

상업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개정이유

- 「상법」(법률 제20436호, 2025. 9. 20. 공포, 2025. 1. 31. 시행), 「상업등기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20437호, 2025. 9. 20. 공포, 2025. 1. 3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지점 등기부를 폐지하고, 국민의 전자신청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 “인터넷등기소”, “등기전자서명”, “전자인감증명서” 등의 정의규정을 마련함(안 제1조의2 신설)
- 등기관이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때에는 등기전자서명을 하도록 하고, 「상업등기법」 제8조제4항의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

- 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식별부호를 기록하는 방법을 폐지하고 등기전자서명의 방법에 의하도록 함(안 제3조)
- 개정 「상법」 제13조 및 제34조에서 지점 소재지에서의 등기를 폐지하고 지점에 관한 사항을 본점 소재지에서만 등기하도록 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함(안 제6조 삭제, 제51조, 제61조)
  - 개정 「상업등기법」 제7조에서 정하는 대법원장의 등기사무의 정지 또는 처분 명령에 관한 권한을 그 사유 등에 따라 법원행정처장 또는 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하도록 정하고, 등기사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처분 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함(안 제7조의2 및 제7조의3 신설)
  - 개정 「상업등기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특례가 마련됨에 따라 접수번호를 부여하는 방법을 관할 등기소 단위에서 전국 등기소 단위로 변경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23조제2항)
  - 인터넷에 의해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신청 주체, 열람의 방법 및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안 제28조의2, 제29조제2항, 제34조제2항 신설)
  - 현재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무인발급기를 통하여 종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나, 등기소의 광역화로 인한 등기소 방문의 불편함, 종이 인감증명서의 위·변조의 위험성 등을 해결하고자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발급 가능

한 전자인감증명서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이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42조의2, 제42조의3 신설)

- 전자증명서의 발급을 위해서는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야 하는 것을 신청인이 직접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발급이 가능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이에 대한 규정을 마련함(안 제46조)
- 등기신청이 접수된 이후에 제52조 또는 제67조의2에 따른 행정정보를 행정기관의 시스템 장애 등으로 인하여 등기관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행정정보를 대법원예규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등기소에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52조제6항)
- 개정 「상업등기법」 제24조제1항제2호의 위임에 따라 전자신청이 가능한 등기유형을 규정함(안 제66조의2 신설)
-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등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전자신청의 첨부정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절차와 자격자대리인이 신청인의 행정정보 제공요구를 대리할 수 있는 요건 및 방법 등을 마련함(안 제67조의2 신설)
- 공탁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하여 상호의 가등기, 예정기간 내 본등기 또는 공탁금이 국고에 귀속되는 경우에 등기관이 해당법원의 공탁관에게 통지하거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통지 또는 공탁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80조제1항,

제82조제1항)

- 개정 「상법」 및 「상업등기법」에서는 본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본점이전등기신청을 종전 또는 새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중 어느 한 곳에 신청하고, 접수한 등기소의 등기관이 일괄하여 등기신청사건을 처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신청 및 처리절차에 대한 규정을 마련함(안 제99조)
- 개정 「상업등기법」 제83조에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함에 따라 이의신청인의 인증서 송신 등 이의신청의 방법을 마련함(안 제171조)

#### 4. 상업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붙임과 같음

#### 5.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 상업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상업등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산정보처리조직”이란 법에 따른 절차에 필요한 전자문서의 작성·제출·통지·관리, 등기부의 보관·관리 및 등기자료의 제공·활용 등 등기사무처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네트워크·보안요소 등을 결합시켜 구축·운영하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로서 법원행정처에 둔 등기전산정보시스템을 말한다.
2. “인터넷등기소”란 이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등기사항의 증명과 열람, 전자문서를 이용한 등기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구축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3. “등기전자서명”이란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의 행정전자서명으로서 등기관이 등기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인감증명서”란 법 제16조에 따른 인감에 관한 증명서로서 종이문서로 발급되는 것을 말한다.
5. “전자인감증명서”란 법 제16조에 따른 인감에 관한 증명서로서 제4

2조의2의 발급절차를 거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시스템에 저장된 인감제출자 및 인감 등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6. “전자증명서”란 법 제17조에 따라 발급되는 전자서명 및 자격에 관한 증명을 말한다.

7. “추가 인증수단”이란 전자증명서를 보완하여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하는 보안매체 등의 인증수단을 말한다.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등기관이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때에는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에서 발급받은 행정전자서명 인증서에 의해 등기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법 제8조제4항의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이와 같다.

제4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추가 인증수단 관련 업무

제5조의 제목 “(회사 본점등기기록의 관할변경 절차)”를 “(회사 등기기록 등의 관할변경 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본점소재지”를 “본점소재지나 합자조합의 주된 영업소소재지”로, “본점등기기록”을 “회사 또는 합자조합의 등기기록”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

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상호등기기록, 미성년자등기기록, 법정대리인등기기록, 외국회사등기기록의 영업소소재지 또는 지배인등기기록의 지배인을 둔 장소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로 바뀌었을 때에는 종전의 관할 등기소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그 등기기록과 인감에 관한 기록의 처리권한을 다른 등기소로 넘겨주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종전의 관할 등기소에 등기기록이 존속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등기기록에서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사항(종전의 관할 등기소의 등기기록에만 기록하여야 할 등기사항은 제외한다)과 등기기록의 개설 사유 및 연월일을 기록하여 관할변경의 대상인 등기기록을 개설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그 등기기록과 인감에 관한 기록의 처리권한을 다른 등기소로 넘겨주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다른 등기소에 이미 등기기록이 개설되어 있는 경우 종전의 관할 등기소는 다른 등기소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전의 관할 등기소에 등기기록이 존속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1. 외국회사의 경우 : 관할이 변경된 구역에 소재하는 영업소에 관한 등기정보를 다른 등기소에 통지 및 해당 영업소의 지배인 인감에 관한 기록의 처리권한을 다른 등기소로 이관

2. 제1호 외의 경우 : 관할이 변경된 구역에 소재하는 영업소에 관한  
등기정보를 다른 등기소에 통지

④ 다른 등기소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기기록의 처리권한을 넘겨  
받은 경우에는 제5조제3항과 동일하게 처리하고,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받은 영업소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⑤ 종전의 관할 등기소는 존속하는 등기기록에 등기할 필요가 없는 사  
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변경으로 말소하는 뜻을 기록하고 그 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등기사무정지명령) ① 대법원장은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7조의3의 처분으로 정상적인 등기사무  
의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등기사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대법원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제1항의 등기사무의 정지명령에  
관한 권한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위임한다.

제7조의3(등기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처분) ① 대법원장은 법 제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어느 등기소에서 전산정  
보처리조직을 이용한 등기사무의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등기소  
(이하 “비상등기소”라 한다)에서 정상적인 등기사무의 처리를 위해 필  
요한 시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1. 법 제5조에 따라 다른 등기소에 비상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무

의 위임

2. 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법원행정처 또는 다른 등기소에 비상등기소의 접수사무 등 등기사무의 일부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의 부여
3. 비상등기소 관할 구역에 임시청사의 설치
4.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인터넷등기소 운영 시간을 연장하는 처분

5. 기타 비상등기소의 정상적인 등기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처분

② 대법원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제1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의 처분에 관한 권한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위임하고, 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처분에 관한 권한을 비상등기소의 사법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하며, 제2호의 처분에 관한 권한은 대법원예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행정처장 또는 비상등기소의 사법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한다.

③ 법원행정처장은 제7조의2제1항의 정지명령 및 제1항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되어 정상적인 등기사무가 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1항에 따른 처분, 제2항의 위임의 절차·방법 및 제3항의 공고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제10조의 제목 “(등기정보중앙관리소와 전산운영책임관)”을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원행정처장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시간 동안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이용시간을 일시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제1항 본문 중 “제9호까지 양식”을 “제9호까지 및 제9호의2부터 제9호의5까지 양식”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2조제1항제4호 중 “이의신청서류”를 “이의신청서류 등”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의2 및 제9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제42조의2에 따른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시스템 이용신청서류 등  
편철장

9의3. 보안매체 발급신청서류 등 편철장

제23조제2항 중 “매년”을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 등기소를 기준으로 1년마다”로 한다.

제24조 중 “순서에 따라 신청서 기타”를 “순서에 따라 대법원예규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신청서 기타”로 한다.

제25조제1항제4호 중 “이의신청서류”를 “이의신청서류 등”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의2 및 제9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제42조의2에 따른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시스템 이용신청서류 등  
편철장 : 5년

9의3. 보안매체 발급신청서류 등 편철장 : 10년

제26조제1항 중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에 대한 증명서(이하 “인감증명서”라 한다)”를 “인감증명서”로 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인터넷에 의한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 ①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 업무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인터넷을 이용하여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열람하려는 사람은 열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한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사의 대표자(합자조합의 경우에는 업무집행조합원을, 외국회사의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를 말한다)
2. 일시 대표이사, 법원에서 선임된 대표이사의 직무대행자, 청산인, 관리인 등
3. 제1호 및 제2호의 사람으로부터 열람권한을 위임받은 자격자대리인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인터넷열람의 범위,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제2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등기기록”을 “등기소 방문에 의한 등기기록”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인터넷에 의한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은 전자적 방법으로 그 내용을 보게 한다.

제33조제1항 중 “열람”을 “등기기록의 열람”으로 한다.

제34조의 제목 “(등기사항의 공시제한)”을 “(등기사항의 공시제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열람”을 “등기기록의 열람”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를 열람하게 할 때에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의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제40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인감카드 또는 전자증명서”를 각각 “인감카드”로 한다.

제4장제3절에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전자인감증명서 발급시스템 이용 및 발급신청) ① 법원행정처장은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시스템(이하 “발급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관리할 수 있다.

- ② 인감을 제출한 사람이 발급시스템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등기소를 방문하여 발급시스템 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대리인이 발급시스템 이용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④ 전자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용도 등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후 전자증명서 및 보안매체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함으로써 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발급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 전자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제42조의3(전자인감증명서의 활용) ① 전자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발급확인번호 등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발급증(이하 “발급증”이라 한다)을 발급시스템에서 발급받아 법원행정처장이 공고로써 지정한 행정기관 등(이하 “지정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전자인감증명서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발급증을 제출받은 지정 행정기관등은 해당 발급증에 기재된 발급확인번호를 발급시스템에 입력하여 그 전자인감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출력한 경우 그 출력물은 전자인감증명서로서의 효력이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 행정기관등의 공고는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한다.

④ 전자인감증명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및 그 형식 등에 관하여는 제41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자인감증명서의 활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제46조제1항 중 “대법원예규”를 “신청인이 인터넷등기소에서 대법원예규”로, “휴대용”을 “컴퓨터 하드디스크, 휴대용”으로, “발급한다”를 “발급받는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

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전송하여 저장할 수 있다.

제46조제3항(중전의 제2항)제1호 중 “생년월일을 기록한다)”를 “외국인 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생년월일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제2항제3호”를 “제3항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전자신청 또는”을 “전자신청,”으로, “발급신청”을 “발급신청 및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의2. 전자인감증명서 발급

제50조제2호 중 “제46조제3항”을 “제46조제4항”으로 한다.

제51조제1항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상법」 제614조제2항·제3항”을 “「상법」 제614조제2항·제3항 및 제614조의2”로 한다.

제52조제1항제3호 중 “(또는 생년월일)”을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생년월일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확인하고 신청인에게는 그 제공을 면제한다”를 “직접 확인하고 신청인에게는 이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제공한 경우에만 그 제공을 면제한다”를 “제공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3항의 경우 등기신청이 접수된 이후에 행정기관의 시스템 장애,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의 장애 또는 등기소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등기관이 그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예규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행정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55조제1항 중 “제3조제3항의 등기관의 식별부호를 기록하여야”를 “제3조제3항에 따라 해당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등기전자서명을 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소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등기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등기기록의 기타사항란 등에 해당 등기소에서 그 등기를 하였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56조제2항제1호 중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기신청(이하 “방문신청”이라 한다)”을 “방문신청”으로, “등기소”를 “등기신청을 한 등기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등기신청(이하 “전자신청”이라 한다)”을 “전자신청”으로, “등기소”를 “등기신청을 한 등기소”로 한다.

제59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61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5장제1절제3관에 제6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2(전자신청이 가능한 등기유형)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자신청이 가능한 등기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사의 등기. 다만, 조직변경의 등기는 제외한다.
2. 외국회사 영업소 등기. 다만,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등기는 제외한다.
3.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등기유형

제67조제4항제1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1조의2제7호의 추가인증을 하여야 한다.

제6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7조의2(정보주체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요구 절차 등) ① 정보주체

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호의 행정기관등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제52조 및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첨부정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에 따라 정보주체 본인으로서 해당 행정기관등의 장으로 하여금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자격자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위임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제1항의 제공요구를 대리할 수 있다.

1. 제68조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하였을 것
2. 등기신청인으로부터 등기신청의 위임을 받았을 것
3. 제52조제1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정보주체 본인으로부터 행정정보의 발급 및 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았을 것

③ 자격자대리인이 제2항의 제공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정보를 작성하고 정보주체 본인의 전자서명정보를 함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송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위임사무를 수행하면서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의 내용을 알게 된 자격자대리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에 따라 해당 행정정보를 위임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행정정보의 범위, 요구 절차, 열람, 발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제6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3년”을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당시의 기간”으로 한다.

①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제67조제1항의 자격자대리인 이외의 자의 경우에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80조제1항 중 “공탁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공탁이 있었음을 증명”을 “공탁법원, 공탁번호, 공탁금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공탁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나 신청정보에 의하여 등기관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해당 공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2조제1항 중 “서면”을 “서면(이하 “공탁원인소멸증명서”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등기관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공탁의 원인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 등을 해당 공탁법원의 공탁관에게 통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통지로 공탁원인소멸증명서의 발급을 대신할 수 있다.

제82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직인날인을 갈음하여 전자이미지직인을 기록할 수 있다.

제89조제6호 및 제7호 중 “구 소재지”를 각각 “종전 소재지”로 한다.

제92조제3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갈음하여 그”를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으로 한다.

제96조제1항 중 “제99조제1항”을 “제99조”로, “제116조제1항제1호 및 제4호를”을 “제116조 중 청산종결의 등기 부분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9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9조(본점이전등기의 신청 및 처리) ① 법 제55조에 따라 본점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종전의 본점 소재지와 새 본점의 소재지 및 이전연월일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관은 해당 등기기록의 본점란에 새 본점의 소재지와 이전연월일을, 기타사항란에 접수한 등기소에서 그 등기를 하였다는 뜻을 각각 기록한 후 그 등기기록과 인감에 관한 기록의 처리권한을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새 본점의 소재지로

넘겨주는 조치를 한다.

제100조제1항 중 “신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를 “새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로, “구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를 “중전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로, “구소재지 관할 등기소를 거쳐 신소재지 관할 등기소”를 “중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 관할 등기소 중 한 곳”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구소재지 관할 등기소”를 “중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로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접수한 중전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상호변경등기신청사건을 함께 처리할 수 있다.

제101조를 삭제한다.

제10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2조(지점명칭의 등기) 지점의 설치등기신청서에 지점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점에 관한 사항란에 그 명칭을 기록한다.

제115조제1항 중 “법 제54조와 제57조 및 법 제65조제1항”을 “법 제65조제1항”으로 한다.

제1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6조(등기기록의 폐쇄) 청산종결의 등기, 합병·합병무효 또는 조직변경으로 인한 해산등기는 기타사항란에 하여야 하고, 이를 등기한 때에는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제118조 중 “제113조까지, 제115조”를 “제100조까지, 제102조부터 제113조까지, 115조”로 한다.

제127조제1항 전단 중 “제99조부터 제102조까지”를 “제99조, 제100조, 제102조”로 한다.

제154조제1항 중 “제99조부터 제102조까지”를 “제99조, 제100조, 제102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116조제1항을”을 “제116조를”로 한다.

제162조제1항 중 “제99조부터”를 “제99조, 제100조,”로 한다.

제163조제1항제4호 중 “법 제74조”를 “상법 제614조제2항제8호”로 한다.

제165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의 등기는 기타사항란에 하여야 하고 이를 등기한 때에는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제165조제1호 중 “구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를 “중전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로, “구소재지”를 “중전 소재지”로 한다.

제171조의 제목 “(이의신청서의 제출)”을 “(이의신청서 등의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83조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작성하고 이의신청인의 인증서등을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③ 법 제8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서 또는 이의신청정보를 관할 지방법원에 송신하는 절차와 방법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별지 제9호의2 양식부터 제9호의5 양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2제7호, 제4조제3호의2, 제22조제1항제9호의3, 제25조제1항제9호의3, 제42조의2제4항 및 제67조제4항제1호(추가 인증수단인 보안매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 규정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하되, 그 이전에 보안매체를 발급받은 법인에 대하여는 발급받은 즉시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접수되어 이 규칙 시행 당시 처리 중인 등기신청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② 제6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접수되는 등기신청부터 적용한다.

제3조(본점등기기록이 폐쇄된 지점등기기록의 폐쇄 등에 관한 특례) 법률 제000호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시행 당시 본점등기기록이 폐쇄된 지점등기기록 또는 본점등기기록이 손상·멸실 등의 사유로 정비가 필요한 지점등기기록에 대해서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폐쇄하거나 정비할 수 있다.

제4조(지점의 등기기록에 관한 경과조치) 개정법 부칙 제3조에 따른 경과조치를 위하여 본점의 등기기록에 지점의 지배인에 관한 사항을 이기

하고 지점의 등기기록을 폐쇄하는 등기사무는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이 일괄하여 처리한다.

제5조(폐쇄된 지점등기기록의 부활에 관한 특례) ① 개정법 시행 전에 폐쇄된 등기기록에 대하여 청산사무가 남아 있는 등의 사유로 다시 등기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본점의 등기기록은 부활하고, 지점의 등기기록은 부활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의 대표자 등은 지점등기기록의 지배인에 관한 사항을 본점의 등기기록에 이기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등기신청을 처리하는 경우 등기관은 해당 등기기록의 기타사항란에 이기의 뜻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2주일 내에 그 대리인을 둔 사무소”를 “주사무소”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제6조”를 “제7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99조, 제101조”를 “제99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54조제3항·제4항·제5항·제6항”을 “제154조제4항·제5항·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상업등기규칙」 제88조”를 “「상업등기규칙」 제7조, 제88조”로 한다.

② 유한책임신탁등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후단 중 “그”를 “그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으

로 한다.

제8조 중 “「상업등기규칙」 제14조제1항”을 “「상업등기규칙」 제14조제1항, 제28조의2”로 한다.

[별지 제9호의2] (외국 합명회사 또는 외국 합자회사)

등기번호	
등록번호	
상 호	.
	.
	.
	.
본 점	.
	.
	.
	.

목 적

---



---

사원 · 청산인에 관한 사항

---



---



---

기 타 사 항

---



---

영업소에 관한 사항

---



---



---

지배인에 관한 사항

회사성립연월일

등기기록의 개설 사유 및 연월일

[별지 제9호의3] (외국 유한책임회사)

등기번호	
등록번호	
상 호	.
	.
	.
	.
본 점	.
	.
	.
	.
공고방법	.
	.
	.
	.
목 적	
업무집행자·청산인에 관한 사항	
기 타 사 항	

지점에 관한 사항

지배인에 관한 사항

회사성립연월일

등기기록의 개설 사유 및 연월일

[별지 제9호의4] (외국 주식회사)

등기번호	
등록번호	
상 호	.
	.
	.
	.
본 점	.
	.
	.
	.
공고방법	.
	.
	.
	.
목 적	
임원에 관한 사항	
기 타 사 항	
영업소에 관한 사항	

지배인에 관한 사항

회사성립연월일

등기기록의 개설 사유 및 연월일

[별지 제9호의5] (외국 유한회사)

등기번호	
등록번호	
상 호	.
	.
	.
	.
본 점	.
	.
	.
	.

<p>목 적</p>

<p>임원에 관한 사항</p>

<p>기 타 사 항</p>

<p>영업소에 관한 사항</p>

지배인에 관한 사항

회사성립연월일

등기기록의 개설 사유 및 연월일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lt;신 설&gt;</p>	<p><u>제1조의2(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u></p> <p><u>1. “전산정보처리조직”이란 법에 따른 절차에 필요한 전자문서의 작성·제출·통지·관리, 등기부의 보관·관리 및 등기자료의 제공·활용 등 등기사무처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네트워크·보안요소 등을 결합시켜 구축·운영하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로서 법원행정처에 둔 등기전산정보시스템을 말한다.</u></p> <p><u>2. “인터넷등기소”란 이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등기사항의 증명과 열람, 전자문서를 이용한 등기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구축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u></p> <p><u>3. “등기전자서명”이란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의 행정전자</u></p>

서명으로서 등기관이 등기사  
무의 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인감증명서”란 법 제16조에  
따른 인감에 관한 증명서로서  
종이문서로 발급되는 것을 말  
한다.

5. “전자인감증명서”란 법 제16  
조에 따른 인감에 관한 증명  
으로서 제42조의2의 발급절차  
를 거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시스템에  
저장된 인감제출자 및 인감  
등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6. “전자증명서”란 법 제17조에  
따라 발급되는 전자서명 및  
자격에 관한 증명을 말한다.

7. “추가 인증수단”이란 전자증  
명서를 보완하여 대법원예규  
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본인  
임을 확인하는 보안매체 등의  
인증수단을 말한다.

제3조(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  
기관이 등기를 마친 시기) ① ·  
② (생략)  
③ 법 제8조제4항의 등기사무를

제3조(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  
기관이 등기를 마친 시기)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등기관이 등기사무를 처리하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조치는 각 등기관이 미리 부여받은 식별부호를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4조(개인정보의 처리)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1. ~ 3. (생략)

<신설>

4.·5. (생략)

제5조(회사 본점등기기록의 관할 변경 절차) ①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회사의 본점소재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로 바뀌었을 때에는 종전의 관할 등기소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그 본점등기기록과 인감에 관한 기록의 처리권한을 다른 등기소

는 때에는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에서 발급받은 행정전자서명 인증서에 의해 등기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법 제8조제4항의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이와 같다.

제4조(개인정보의 처리) -----  
-----  
-----  
-----.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추가 인증수단 관련 업무

4.·5. (현행과 같음)

제5조(회사 등기기록 등의 관할변경 절차) ① -----  
----- 본점소재지나 합  
자조합의 주된 영업소소재지--  
-----  
-----  
-- 회사 또는 합자조합의 등기  
기록-----

로 넘겨주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중전의 관할 등기소에 지점 등기기록이 존속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변경의 대상이 되는 본점등기기록에서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사항을 기록한 지점등기기록을 개설하고 그 해당란에 회사성립 연월일과 등기기록의 개설 사유 및 연월일을 기록한 후 제1항의 절차에 따른다.

③ (생략)

④ 다른 등기소에 지점등기기록이 개설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등기를 한 때에 그 지점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다만, 지점등기기록에 지배인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이 변경된 본점등기기록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⑤ 다른 등기소는 관할이 변경된 본점등기기록에 등기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변경으로 말소하는 뜻을 기록하고 그 사항을 말소하여야

-----  
--.

<삭 제>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한다.

제6조(회사 지점등기기록의 관할

변경 절차) ①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회사의 지점소재지가 다  
른 등기소의 관할로 바뀌었을  
때에는 종전의 관할 등기소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그 지점등기기록과 인감에 관한  
기록의 처리권한을 다른 등기소  
로 넘겨주는 조치를 하여야 한  
다.

② 종전의 관할 등기소에 지점  
등기기록 또는 본점등기기록이  
존속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  
우에는 지점등기기록 또는 본점  
등기기록에서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사항(종전의 관할 등기소의  
등기기록에만 기록하여야 할 등  
기사항은 제외한다)과 등기기록  
의 개설 사유 및 연월일과 회사  
성립 연월일을 기록하여 관할변  
경의 대상인 지점등기기록을 개  
설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  
용하여 그 지점에 관한 등기기  
록과 지배인의 인감에 관한 기  
록의 처리권한을 다른 등기소로

<삭 제>

넘겨주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다른 등기소에 이미 등기기록이 개설되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관할 등기소는 다른 등기소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관할이 변경된 구역에 소재하는 지점과 그 지점의 지배인에 관한 등기정보를 통지하고, 해당 지배인의 인감에 관한 기록의 처리권한을 다른 등기소로 넘겨주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전의 관할 등기소에 등기기록이 존속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④ 다른 등기소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기기록의 처리권한을 넘겨받은 경우에는 제5조제3항과 동일하게 처리하고, 제3항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받은 지점 및 지배인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⑤ 종전의 관할 등기소는 존속하는 본점등기기록 또는 지점등기기록에 등기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변경

으로 말소하는 뜻을 기록하고 그 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7조(상호등기기록 등의 관할변경 절차) 상호등기기록, 미성년자등기기록, 법정대리인등기기록, 지배인등기기록, 합자조합등기기록, 외국회사등기기록의 관할변경 절차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신 설>

제7조(상호등기기록 등의 관할변경 절차) ①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상호등기기록, 미성년자등기기록, 법정대리인등기기록, 외국회사등기기록의 영업소소재지 또는 지배인등기기록의 지배인을 둔 장소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로 바뀌었을 때에는 종전의 관할 등기소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그 등기기록과 인감에 관한 기록의 처리권한을 다른 등기소로 넘겨주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종전의 관할 등기소에 등기기록이 존속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등기기록에서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사항(종전의 관할 등기소의 등기기록에만 기록하여야 할 등기사항은 제외한다)과 등기기록의 개설 사유 및 연월일을 기록하여 관할변경의 대상인 등기기록을 개설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그 등기기록과 인감에

<신 설>

관한 기록의 처리권한을 다른 등기소로 넘겨주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다른 등기소에 이미 등기기록이 개설되어 있는 경우 종전의 관할 등기소는 다른 등기소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전의 관할 등기소에 등기기록이 존속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1. 외국회사의 경우 : 관할이 변경된 구역에 소재하는 영업소에 관한 등기정보를 다른 등기소에 통지 및 해당 영업소의 지배인 인감에 관한 기록의 처리권한을 다른 등기소로 이관

2. 제1호 외의 경우 : 관할이 변경된 구역에 소재하는 영업소에 관한 등기정보를 다른 등기소에 통지

④ 다른 등기소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기기록의 처리권한을 넘겨받은 경우에는 제5조제3

<신 설>

<신 설>

항과 동일하게 처리하고,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받은 영업소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⑤ 종전의 관할 등기소는 존속하는 등기기록에 등기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변경으로 말소하는 뜻을 기록하고 그 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

<신 설>

제7조의2(등기사무정지명령) ①

대법원장은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7조의3의 처분으로 정상적인 등기사무의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등기사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대법원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제1항의 등기사무의 정지명령에 관한 권한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위임한다.

<신 설>

제7조의3(등기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처분) ① 대법원장은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어느 등기

소에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  
용한 등기사무의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등기소(이하 “비상  
등기소”라 한다)에서 정상적인  
등기사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  
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1. 법 제5조에 따라 다른 등기소  
에 비상등기소의 관할에 속하  
는 사무의 위임
2. 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법원  
행정처 또는 다른 등기소에  
비상등기소의 접수사무 등 등  
기사무의 일부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의 부여
3. 비상등기소 관할 구역에 임  
시청사의 설치
4.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등기신  
청을 할 수 있도록 인터넷등  
기소 운영시간을 연장하는 처  
분
5. 기타 비상등기소의 정상적인  
등기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  
한 처분

② 대법원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제1항제1호, 제4호 및 제5

호의 처분에 관한 권한을 법원 행정처장에게 위임하고, 제1항 제3호 및 제5호의 처분에 관한 권한을 비상등기소의 사법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하며, 제2호의 처분에 관한 권한은 대법원예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행정처장 또는 비상등기소의 사법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한다.

③ 법원행정처장은 제7조의2제1항의 정지명령 및 제1항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되어 정상적인 등기사무가 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1항에 따른 처분, 제2항의 위임의 절차·방법 및 제3항의 공고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제10조(등기정보중앙관리소와 전산운영책임관) ① ~ ③ (생략)  
<신 설>

제10조(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원행정처장은 전산정보처

제13조(등기기록의 편성) ① 등  
기기록은 그 종류에 따라 전산  
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별지 제  
1호부터 제9호까지 양식의 각  
란에 기록한 등기정보로 편성한  
다. 다만, 외국회사 등기기록은  
대한민국에서 설립되는 같은 종  
류 또는 가장 비슷한 회사의 등  
기기록의 예에 의하여 편성한  
다.

② (생략)

제22조(장부의 비치) ① 등기소에  
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 3. (생략)
4. 이의신청서류 편철장
5. ~ 9. (생략)

<신설>

<신설>

리조직의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시간 동안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이용시간을 일시 제한할 수 있  
다.

제13조(등기기록의 편성) ① ---  
-----  
-----  
----- 제9호까지 및 제9호의2  
부터 제9호의5까지 양식-----  
--. <단서 삭제>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장부의 비치) ① -----  
-----  
-----.

1. ~ 3. (현행과 같음)
  4. 이의신청서류 등 --
  5. ~ 9. (현행과 같음)
- 9의2. 제42조의2에 따른 전자인  
감증명서 발급시스템 이용신  
청서류 등 편철장
- 9의3. 보안매체 발급신청서류  
등 편철장

10. ~ 13. (생략)

②·③ (생략)

제23조(상업등기신청서 접수장)

① (생략)

② 제1항제3호의 접수번호는 매  
년 새로 부여하여야 한다.

제24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  
철장) 등기사건의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는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  
철장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25조(장부의 보존기간) ① 등기  
소에 갖추어 두어야 할 장부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4. 이의신청서류 편철장 : 10년

5. ~ 9. (생략)

<신설>

<신설>

10. ~ 12. (생략)

②·③ (생략)

10. ~ 1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23조(상업등기신청서 접수장)

① (현행과 같음)

② ----- 대  
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 등기소를 기준으로 1년마  
다 ---.

제24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  
철장) -----  
----- 순서에  
따라 대법원예규에서 정하는 방  
식으로 신청서 기타 --.

제25조(장부의 보존기간) ① -----  
-----  
-----.

1. ~ 3. (현행과 같음)

4. 이의신청서류 등 -----

5. ~ 9. (현행과 같음)

9의2. 제42조의2에 따른 전자인  
감증명서 발급시스템 이용신  
청서류 등 편철장 : 5년

9의3. 보안매체 발급신청서류  
등 편철장 : 10년

10. ~ 1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26조(열람 및 각종 증명서의 신청방법) ①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기록 또는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를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증명서(이하 “등기사항증명서”라 한다) 또는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에 대한 증명서(이하 “인감증명서”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신설>

제26조(열람 및 각종 증명서의 신청방법) ① -----  
-----  
-----  
-----  
----- 인감증명서 -----  
-----  
-----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28조의2(인터넷에 의한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 ①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 업무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인터넷을 이용하여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열람하려는 사람은 열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한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

람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사의 대표자(합자조합의 경우에는 업무집행조합원을, 외국회사의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를 말한다)

2. 일시 대표이사, 법원에서 선임된 대표이사의 직무대행자, 청산인, 관리인 등

3. 제1호 및 제2호의 사람으로부터 열람권한을 위임받은 자격자대리인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인터넷열람의 범위,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제29조(열람의 방법) 등기기록 또는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은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사항을 전자적 방법으로 보게 하거나 그 내용을 기록한 서면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가 종이 형태로 작성된 경우에는 등기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직원이 보

제29조(열람의 방법) ① 등기소 방문에 의한 등기기록 -----

-----  
-----  
-----  
-----  
-----  
-----  
-----

는 앞에서 열람하여야 한다.

<신 설>

제33조(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증명 등) ① 열람 또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업무는 인터넷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34조(등기사항의 공시제한) 열람 또는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의 경우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 또는 지배인 등의 주민등록번호 전부 또는 일부를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 설>

제40조(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 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인감증명서발급신청서를 등기소에 제출하고 인감카드 또는 전자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부동산매도용 또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

② 인터넷에 의한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은 전자적 방법으로 그 내용을 보게 한다.

제33조(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증명 등) ① 등기기록의 열람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34조(등기사항의 공시제한 등) ① 등기기록의 열람 -----  
-----  
-----.

②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를 열람하게 할 때에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의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제40조(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 ① -----  
----- 인감카드 -----  
-----.

따라 등록된 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매도용 인감증명서발  
급신청서에는 매수자의 성명(상  
호 또는 명칭), 주소(본점 또는  
사무소 소재지),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적어야 한다.

② (생략)

③ 인감카드 또는 전자증명서를  
제시하거나 제2항의 신청에 따  
른 인감증명서 발급번호와 비밀  
번호를 제시하면 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에 관한 권한 또는 인  
감증명서의 수령에 관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신 설>

-----  
-----  
-----  
-----  
-----  
-----  
-----  
-----.

② (현행과 같음)

③ 인감카드-----  
-----  
-----  
-----  
-----  
-----  
-----.

제42조의2(전자인감증명서 발급  
시스템 이용 및 발급신청) ①  
법원행정처장은 전자인감증명  
서 발급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  
기 위하여 전자인감증명서 발급  
시스템(이하 “발급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관리할 수  
있다.

② 인감을 제출한 사람이 발급  
시스템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등기소를 방문하여 발급시스템

<신 설>

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리인이 발급시스템 이용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전자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용도 등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후 전자증명서 및 보안매체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함으로써 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발급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 전자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제42조의3(전자인감증명서의 활

용) ① 전자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발급확인번호 등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발급증(이하 “발급증”이라 한다)을 발급시스템에서 발급받아 법원행정처장이 공고로써 지정한 행정기관 등(이하 “지정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에 제출

하는 방법으로 전자인감증명서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발급증을 제출 받은 지정 행정기관등은 해당 발급증에 기재된 발급확인번호를 발급시스템에 입력하여 그 전자인감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출력한 경우 그 출력물은 전자인감증명서로서의 효력이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 행정기관등의 공고는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한다.

④ 전자인감증명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및 그 형식 등에 관하여는 제41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자인감증명서의 활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제46조(전자증명서의 발급) ① 전자증명서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대용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발급한다.

제46조(전자증명서의 발급) ① ----- 신청인이 인터넷등기소에서 대법원예규-----  
----- 컴퓨터 하드디스크, 휴대용 ---- 발급받는다.

<신 설>

② 전자증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인감제출자의 성명, 자격,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생년월일을 기록한다)

2. ~ 5. (생략)

③ 제2항제3호의 증명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④ 제1항에 의하여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를 전자신청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터넷등기소에서 이용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⑤ 전자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1. ~ 3. (생략)

<신 설>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전송하여 저장할 수 있다.

③ -----  
-----.

1. -----  
-----  
-----  
-----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생년월일을 말한다)

2. ~ 5.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제3호-----  
-----.

⑤ -----  
----- 전자신청, -----  
----- 발급신청 및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신청 등-----  
-----.

⑥ -----  
-----.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전자인감증명서 발급

4. (생략)

제50조(전자증명서의 효력소멸)  
다음 각 호의 경우 전자증명서의 효력은 소멸된다.

1. (생략)
2. 제46조제3항의 증명기간이 지난 경우
- 3.·4. (생략)

제51조(신청정보) ①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1. ~ 6. (생략)
7. 회사의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신청의 경우에는 그 지점의 표시

8. ~ 11. (생략)

②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으로 본점 또는 주된 영업소를 이전한 경우에 신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에는 해당 등기기록에 따라 조합원의 가입연월일, 사원의 입사연월일, 업무집행자·임원·청산인의 취임연월일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4. (현행과 같음)

제50조(전자증명서의 효력소멸) -  
-----  
-----.

1. (현행과 같음)
2. 제46조제4항-----  
-----
- 3.·4. (현행과 같음)

제51조(신청정보) ① -----  
-----  
-----.

1. ~ 6. (현행과 같음)
- <삭제>

8. ~ 11. (현행과 같음)

<삭제>

③ 「상법」 제514조의2(같은 법 제516조의8제2항으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상법」 제614조제2항·제3항 등에 의하여 외국에서 생긴 사항의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통지가 도달한 연월일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52조(첨부정보) ①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그 신청정보와 함께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1. 2. (생략)
3. 주소, 주민등록번호(또는 생년월일)를 등기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4. (생략)

② (생략)

③ 첨부정보 중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첨부정보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기

③ -----  
-----  
----- 「상법」 제614조제2항·제3항 및 제614조의2 -----  
-----  
-----  
-----  
-----.

제52조(첨부정보) ① -----  
-----  
-----  
-----  
-----.

1. 2. (현행과 같음)

3.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생년월일을 말한다)----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관이 확인하고 신청인에게는 그 제공을 면제한다. 다만, 그 첨부 정보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한 경우에만 그 제공을 면제한다.

④·⑤ (생략)

<신설>

제55조(등기의 방법) ① 등기를 할 때에는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기록 중 해당란에 등기사항,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등기연월일을 기록하고 제3조제3항의 등기관의 식별부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 직접 확인하고 신청인에게는 이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

----- 제공하여야 한다.

④·⑤ (현행과 같음)

⑥ 제3항의 경우 등기신청이 접수된 이후에 행정기관의 시스템 장애,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의 장애 또는 등기소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등기관이 그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예규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행정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55조(등기의 방법) ① -----

----- 제3조제3항에 따라 해당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등기전자서명을 하여야 ---

②·③ (생략)

<신설>

제56조(등기신청의 취하) ① (생략)

② 제1항의 취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기신청(이하 “방문신청”이라 한다) :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취하서를 제출하는 방법

2.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등기신청(이하 “전자신청”이라 한다) :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취하정보를 전자문서로 등기소에 송신하는 방법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소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등기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등기기록의 기타사항란 등에 해당 등기소에서 그 등기를 하였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56조(등기신청의 취하)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방문신청 -----  
-----  
-----  
---- 등기신청을 한 등기소-  
-----

2. 전자신청 -----  
-----  
-----  
-----  
---- 등기신청을 한 등기소-  
--

제59조(해산한 회사의 등기기록  
폐쇄 등) ①·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회사의 등기기  
록을 부활하거나 법 제19조 또  
는 제2항에 따라 회사의 등기기  
록을 폐쇄한 때에는 전산정보처  
리조직을 이용하여 지체 없이  
그 뜻을 지점소재지의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  
를 받은 등기관은 지체 없이 해  
당 지점등기기록을 부활 또는  
폐쇄하여야 한다.

제61조(서명에 의한 등기신청) ①  
다음 각 호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  
인은 신청서에 제60조제1항의  
기명날인을 갈음하여 서명할 수  
있다.

1. 회사의 본점과 지점소재지에  
서 공통으로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

2. 3. (생략)

② (생략)

<신설>

제59조(해산한 회사의 등기기록  
폐쇄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삭제>

제61조(서명에 의한 등기신청) ①  
-----  
-----  
-----  
-----  
-----  
-----

<삭제>

2.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66조의2(전자신청이 가능한 등  
기유형)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제67조(전자신청의 방법) ① ~

③ (생략)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송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인 또는 작성명의인의 전자서명정보를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1. 법인 : 「상업등기법」의 전자증명서 <후단 신설>

2. 3. (생략)

⑤ (생략)

<신설>

따라 전자신청이 가능한 등기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사의 등기. 다만, 조직변경의 등기는 제외한다.

2. 외국회사 영업소 등기. 다만,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으로 이전하는 등기는 제외한다.

3.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등기유형

제67조(전자신청의 방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1. -----  
----- . 이 경우 제1조의2제7호의 추가인증을 하여야 한다.

2. 3.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제67조의2(정보주체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요구 절차 등) ① 정보주체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호의 행정기관등이 보유

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제52조 및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첨부 정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에 따라 정보주체 본인으로서 해당 행정기관등의 장으로 하여금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전산정보처리 조직에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자격자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위임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제1항의 제공요구를 대리할 수 있다.

1. 제68조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하였을 것

2. 등기신청인으로부터 등기신청의 위임을 받았을 것

3. 제52조제1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정보주체 본인으로부터 행정정보의 발급 및 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았을 것

③ 자격자대리인이 제2항의 제공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등기소를 통하여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정보를 작성하고 정보주체 본인의 전자서명정보를 함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송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위임사무를 수행하면서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 정보의 내용을 알게 된 자격자 대리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에 따라 해당 행정정보를 위임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행정정보의 범위, 요구 절차, 열람, 발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제69조(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

①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단서 신설>

제69조(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

①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제67조제1항의 자격자대리인 이외의 자의 경우에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는 그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연장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④ (생략)

제80조(상호의 가등기 등) ① 상호의 가등기 및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예정기간 연장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에 따라 공탁한 공탁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공탁이 있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 ④ (생략)

제82조(공탁금의 회수절차) ① 회사나 발기인 또는 사원이 법 제44조제1항에 의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등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당시의 기간-----.

④ (현행과 같음)

제80조(상호의 가등기 등) ① -----  
-----  
-----  
----- 공탁법원, 공탁번호, 공탁금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  
--. 이 경우 공탁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나 신청정보에 의하여 등기관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해당 공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82조(공탁금의 회수절차) ① -----  
-----  
-----

기관은 회사나 발기인 또는 사원의 청구에 따라 공탁의 원인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생략)

③ 등기관은 제2항의 청구서 중 1통에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라는 증명문을 부기하고, 증명의 연월일, 등기소, 등기관의 표시 및 그 성명을 적은 후 직인을 날인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89조(등기기록의 폐쇄) 다음 각 호의 등기는 기타사항란에 하여야 하고, 이를 등기할 때에는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  
-----  
----- 서면  
(이하 “공탁원인소멸증명서”라 한다)----- . 다만, 등기관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공탁의 원인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 등을 해당 공탁법원의 공탁관에게 통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통지로 공탁원인소멸증명서의 발급을 대신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 이 경우 직인날인을 갈음하여 전자이미지직인을 기록할 수 있다.

제89조(등기기록의 폐쇄) -----  
-----  
-----  
----- .

1. ~ 5. (생략)

6. 상호의 등기를 한 자, 미성년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 구 소재지에서 하는 영업소 이전의 등기(중전 등기소의 관할 구역 내에 다른 영업소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지배인을 둔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 구 소재지에서 하는 영업소 이전의 등기(중전 등기소의 관할 구역 내에 그 지배인을 둔 다른 영업소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92조(조합원 등의 등기) ①·② (생략)

③ 조합원 또는 청산인의 등기를 할 때 그 조합원 또는 청산인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같음하여 그 생년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96조(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 합자조합의 등기에 관

1. ~ 5. (현행과 같음)

6. -----  
-----  
----- 중전 소재지 -----  
-----  
-----

7. -----  
-----  
----- 중전 소재지 -----  
-----  
-----

제92조(조합원 등의 등기)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

제96조(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 -----

하여는 제99조제1항, 제106조제1항, 제109조제1항, 제110조제2항, 제116조제1항제1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

②·③ (생략)

④ 주된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의 등기사항에 관하여는 제115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99조(본점이전등기의 신청 및 지점등기기록 등의 처리) ① 법 제55조제1항의 본점이전등기신청은 주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서에 주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에 관한 정보를 함께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주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지점등기기록이 개설되어 있는 경우 해당 등기소의 등기관은 직권으로 그 지점등기기록을 폐쇄함과 동시에 법 제55조제1항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쇄하는 지점등기기록에 지배인에 관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배인에 관한 사항도 함께 등기

----- 제99조-----

-----  
-- 제116조 중 청산종결의 등기부분을 -----.

②·③ (현행과 같음)

<삭제>

제99조(본점이전등기의 신청 및 처리) ① 법 제55조에 따라 본점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종전의 본점 소재지와 새 본점의 소재지 및 이전 연월일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관은 해당 등기기록의 본점란에 새 본점의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기타사항란에 접수한 등기소에서 그 등기를 하였다는 뜻을 각각 기록한 후 그 등기기록과 인감에 관한 기록의 처리권한을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새 본점의 소재지로 넘겨주는 조치를 한다.

하여야 한다.

③ 구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관할 구역 내에 소재하는 지점이 있는 경우 해당 등기소의 등기관은 제116조제1항제1호의 등기를 함과 동시에 직권으로 지점등기기록을 개설하여야 한다.

제100조(본점이전등기와 상호변경등기) ① 본점이전등기신청을 한 회사의 상호가 신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법 제29조에 해당하여 본점이전등기를 할 수 없고, 구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법 제29조에 해당하여 상호변경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53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상호변경등기신청은 본점이전등기신청과 동시에 구소재지 관할 등기소를 거쳐 신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할 수 있다.

② 구소재지 관할 등기소는 법 제56조제2항의 통지와 함께 제1항의 상호변경등기의 신청이 있었다는 뜻을 신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

제100조(본점이전등기와 상호변경등기) ① -----  
----- 새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  
-----  
--- 종전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도 -----  
-----  
-----  
-----  
-----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 관할 등기소 중 한 곳-----  
--.

② 제1항의 신청을 접수한 종전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상호변경등기신청사건을 함께 처리할 수 있다.

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 제55조의 본점이전등기신청이 접수된 후에 법 제29조가 적용되는 등기신청이 접수된 경우, 구소재지 관할 등기소 등기관은 본점이전등기를 하기 전까지 그 등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1조(본점소재지 관할 등기소

에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 ①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을 본점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 제58조는 다음 각 호의 등기 신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지배인에 관한 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할 지점에 관한 등기
2. 본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 하는 본점이전등기
3.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와 소멸하는 회사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다

③ -----  
-----  
-----  
-- 중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  
-----  
--.

<삭 제>

른 경우의 합병등기

4.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등기

② 법 제58조의 신청은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하는 신청서에, 동시에 신청하고자 하는 지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를 기재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한다.

제102조(지점소재지에서의 등기)

① 본점과 지점소재지에서 공통으로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지점소재지에서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본점소재지에서 등기가 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지점소재지에서 지점의 설치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상호에 지점이라고 덧붙여 기록하여야 한다. 신청서에 지점의 명칭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점에 관한 사항란에 그 명칭도 기록한다.

제115조(등기기록의 개설 사유와 연월일의 기록) ① 법 제54조와

제102조(지점명칭의 등기) 지점의

설치등기신청서에 지점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점에 관한 사항란에 그 명칭을 기록한다.

제115조(등기기록의 개설 사유와 연월일의 기록) ① 법 제65조제

제57조 및 법 제65조제1항의 등  
기사항(회사성립의 연월일은 제  
외한다)은 등기기록의 개설 사  
유 및 연월일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16조(등기기록의 폐쇄) ① 다  
음 각 호의 등기는 기타사항란  
에 하여야 하고, 이를 등기한 때  
에는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1. 본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 구소  
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하는  
본점이전등기

2. 지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 구소  
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하는  
지점이전등기(구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관할 구역 내에 본  
점 또는 다른 지점이 있는 경  
우는 제외한다)

3. 지점폐지등기(해당 등기소의  
관할 구역 내에 본점 또는 다  
른 지점이 있는 경우는 제외  
한다)

1항-----  
-----  
-----  
-----  
-----

② (현행과 같음)

제116조(등기기록의 폐쇄) 청산종  
결의 등기, 합병·합병무효 또  
는 조직변경으로 인한 해산등기  
는 기타사항란에 하여야 하고,  
이를 등기한 때에는 그 등기기  
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제1항, 제110조제2항, 제113조, 제115조 및 제116조를 준용한다.

② (생략)

③ 신설회사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의 본점소재지 관할 등기소와 분할존속회사나 분할소멸회사 또는 분할되는 회사의 본점소재지 관할 등기소가 다른 경우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등기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101조제1항을 준용한다.

④·⑤ (생략)

⑥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무효로 인한 해산등기에 관하여는 제116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162조(합명회사 및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 유한회사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99조부터 제102조까지,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제1항, 제110조제2항, 제113조, 제115조, 제116조, 제130조부터 제132조까지, 제145조, 제153조, 제154조제2항을 준

-----  
-----  
--.

② (현행과 같음)

<삭제>

④·⑤ (현행과 같음)

⑥ -----  
-----  
-----  
----- 제116조를 -----  
--.

제162조(합명회사 및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 -----  
----- 제99조, 제100조, -----  
-----  
-----  
-----

용한다.

② (생략)

제163조(영업소 설치등기) ① 영업소 설치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등기소에 이미 영업소 설치등기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3. (생략)
4. 법 제74조에 해당하는 외국 회사의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의 공고방법의 결정을 증명하는 정보

② (생략)

제165조(영업소 등기기록의 폐쇄) 다음 각 호의 외국회사 영업소 등기에 관하여는 제116조제1항을 준용한다.

1.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 구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하는 영업소 이전의 등기(구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관할 구역 내에 다른 영업소가 있는

-----.

② (현행과 같음)

제163조(영업소 설치등기) ① -----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상법 제614조제2항제8호-----

② (현행과 같음)

제165조(영업소 등기기록의 폐쇄) 다음 각 호의 등기는 기타사항란에 하여야 하고 이를 등기한 때에는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1. -----  
-----  
종전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종전  
소재지 -----  
-----

경우에는 제외한다)

2.·3. (생략)

제171조(이의신청서의 제출) (생략)

<신설>

<신설>

-----  
2.·3. (현행과 같음)

제171조(이의신청서 등의 제출)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법 제83조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작성하고 이의신청인의 인증서등을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③ 법 제8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서 또는 이의신청정보를 관할 지방법원에 송신하는 절차와 방법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의안 소관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연락처	(02) 3480-1879